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(별지 제7호 서식)

외 화 획 득 명 세 서
(년 제 기)

1. 인적사항

(1) 성 명		(2) 사업자등록번호	
(3) 상 호		(4) 사업장소재지	
(5) 거 래 기 간	년 월 일 ~ 월 일	(6) 작 성 일	
(7) 영세율적용근거		(9) 법 정 서 식 제출불능사유	
(8) 법정제출 서류명		(10) 법정서식제출 가능여부및일자	

2. 외화획득내용

(11) 공급일자	공급받는자		공급내용			(17) 비 고 (외화 등)
	(12)상호및성명	(13) 국적	(14) 구 분 (재화 또는 용역)	(15) 명 칭	(16) 금 액 (원화)	

위와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기 「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」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외 관계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 임 : 1.
2.
3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하

작 성 방 법

(1)~(4): 제출자(공급자)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.
(5), (6):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.
(7)~(17)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4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한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,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.